2022년 상반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관련 자문 요청	
	3	중등임용시험 2차 체육 실기시험 중 발행한 부정행위 처분 여부	
	4	주안초 이전적지 토양오염처리비용 손해배상 관련(미추홀구청)	
	5	사립학교 시설지원 사무처리와 관련한 자문	
	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해석	
	7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을 임차하며 설정한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보전 가능성 여부	
	8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대한 법률자문	
	9	채권가압류 발생 시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자문 요청	
	10	지방보조금 환수조치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11	교장공모제관련 법령해석	
	12	채무자 사망한 경우 채권확보방법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13	인천영어마을 간담회 2명의 참석교사 발언이「공교육정상화법」위반 선행학습 조장 여부	
	14	입찰담합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	
	15	불법수색관련 법률자문	
	16	부평중 내 미등기 사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제기 검토	
	17	학력향상 방과후 강사 선정 관련 법률자문	
	18	난정평화교육원 개원에 따른 승진가산점 부여 관련	
	19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기한 연기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20	부평중학교 복합시설증축을 위한 사유지 처리 관련 법률 자문 요청	
	21	채권추심관련 처리와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	
	22	직위해제 교사의 보수 소급 지급 등	
	23	학교야구부 지도자 재채용 관련 법률자문	
	24	계약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자문회신	
	25	위생용품 자판기 미수거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26	과다지급 급여 반환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27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회수 관련 자문	
	28	사용허가 만료 자판기 철거 사무처리 관련	
총계	**28건**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법 률 자 문 결 과 보 고 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 교사들이 금원을 모아 퇴직 예정 교원(교장, 교사)에게 각각 전별금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이「청탁금지법」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 퇴직 예정 교장과 교사에게 전별금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여러명이 교사가 갹출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법문에 있는 동일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법이 아닌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불과함) □ 퇴직 예정 교장과 교사 간 직무관련성은 구체적 지급행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단순히 의례적, 정리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움 □ 신고의 필요성은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신고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함 □ 교장과 교사는 지휘·감독관계에서 근무평점이나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고 사후수뢰죄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소속 기관장은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함 □ 국민권익위원회 해석, 관련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소속 기관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수사의뢰하는 것이 의무임
			□ 퇴직 예정 교장과 교사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힘듦(다만, 구체적 상황으로 판단 필요) □ 퇴직 예정 교장과 교사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합산한 금액 150만 원은「청탁금지법」위반 □ 퇴직 예정 교사와 교사 간은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면「청탁금지법」위반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수사의 필요성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하여야 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관련 자문요청	□ 남자교사들의 단톡방에서 노출이 많은 사진이 게시된 인스타 주소를 올려 게시하는 행위(여러차례), 동료교사의 생일에 성인 속옷 코스튬을 선물하겠다고 하면서 성인 속옷 코스튬 사진을 보여주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 위반인지 여부	□ 위반 아님
			□ 위반 아님
			□ 위반 아님
3	중등임용시험 2차 체육 실기시험 중 발행한 부정행위 처분 여부	□ 특정 대학명의 표식이 있는 복장으로 시험에 응시한 것과 관련 부정행위 처분 가능한지	□ 실기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고, 그렇다면 이를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평가위원 앞에서 그 옷을 입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이러한 모호한 사정하에서 부정행위로 처분할 수는 없다는 판단임
4	주안초 이전적지 토양오염처리비용 손해배상 관련(미추홀구청)	□ 미추홀구청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제12조(해석)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 미추홀구청의 공문에 대한 대응방안은?	□ 오염과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의 귀책사유가 없는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제11조(손해배상) 소정의 손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제12조(해석)는 무조건 '갑'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며,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 인천시교육청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추홀구청의 공문에 대해서는 일단 간략하게 '책임없음'으로 대응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 매매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기한인 6개월이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도과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별도의 권리주장이 존재 할 경우 재판단 여지가 있음) □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채무자의 선의, 무과실의 경우라는 선행판결(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3933)이 존재하므로 귀청에 유리한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하자의 존재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선행판결(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3933)이 존재하므로 귀청에 유리한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손실보상협의계약서상 손해배상: '기타 손해'는 소유권에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민법」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 등 민법의 일반적 규정이 해석에 우선하므로 귀청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토양 오염에 따른 정화비용은 그 토양의 오염을 유발한 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하자가 아님)에 해당함. 부동산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된 부분이 보이지 않음. 따라서 귀청은 미추홀구청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사료됨. □ 제11조의 해석은 민법상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제12조에 따라서 '갑'의 해석에 따를 필요가 없어 보임 □ 귀청에서는 미추홀구청의 손해배상청구 공문에 답변을 해야할 의무가 없음. 공문이 어떤 법률적 효과가 없음. 그리고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귀청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만 간단히 보내도 될 것이라고 사료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손해배상 청구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얼마든지 청구금액을 확장, 감축할 수 있음.
5	사립학교 시설지원 사무처리와 관련한 자문	□ 이전(학교 위치변경)을 신청한 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감이 기 지원한 시설사업비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사립학교에서 지원받을 당시 제출한 '각서'가 반환 근거로 타당한지? □ 반환 근거로 타당할 경우 반환 기준 및 반환금액 산출 방식이 정당한지?	□ 각서에 '향후 5년 이내 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이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 각서상' 향후 5년 이내 학교 이전 재배치계획이 없음'으로 서약하여 공법상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교부시점 기준 5년이 도과하여 교부조건에 위배되지 않아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근거 없이 반환불가 □ 각서에 '향후 5년 이내 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이 없음'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지원금 반환 청구 가능 □ 사학기관 특례규칙 제34조를 준용한 정액법 적용하여 반환금액 산출이 적절하다고 판단
			□ 수익적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보는 경우 서약서를 근거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나 각서에 기간이나 액수 등의 구체적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점을 사립학교에서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여지 있고, 공법상 계약으로 볼 경우도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판결없이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가 가능함. - 반환청구는 가능한 상황이나 반환요구에 대하여 당해 학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득이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반환금을 산출하는 것, 반환대상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모두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보여 비례원칙이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이나 직접 근거 규정이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일체 없으므로 자의적인 행정권의 행사 등으로 구성하여 상대방이 문제삼을 여지는 있음
			□ '서약서(각서)'는 공법상의 합의로서 유효하므로 '서약서(각서)'를 근거로 기 지원 시설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34조(감가상각)을 준용한 정액법 적용하여산출한 금액이 '기 지원 시설사업비 상당액'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교육감이 위 산출방식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해석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제①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에서 조사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을 **갑설)** 인사·징계권한이 있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 보아야 하는지 **을설)** 징계대상자가 속해 있는 학교의 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 을설
			□ 을설
			□ 을설
			□ 갑설
7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을 임차하며 설정한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보전 가능성 여부	□ 자문 배경 1. '13.6.21. 우리 교육청이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을 임차하며 임차보증금(3억 5천만원)에 대한 전세권을 전체 면적 733.31평방미터 중 남측 336.92평방미터로 설정함. 2. '22.2.25. 임대인이 전교조 사무실 전세권에 대한 변경 계약 요청함. -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을 현재 전교조 인천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202호(262.23㎡)에 한정하고 201호에 대한 전세권 일부 포기를 요구함.	□ 현재 전교조 인천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202호(전용면적 262.23㎡)로 전세권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201호 전유부분과 비교하여 위 전용면적(262.23㎡)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되고, 축소된 전세부분을 구분 등기할 수 없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될 것임. - 또한 전세권의 범위가 축소됨으로 인하여 담보력이 약화되어 임대보증금이 전액 회수가 안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세권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일부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람.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자문 내용 1. 전세권 범위 축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2. 임차보증금(3억5천만원) 보전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예, 공증) 등이 있는지?	□ 임대보증금 보전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는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 설정보다 더 안전한 장치는 없음. - 공증은 당해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고 일반채권화 되므로 권장할 만한 보호장치는 될 수 없음. 따라서 현 전세권 설정 등기는 그대로 놔두고 전교조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상 계약범위만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람.
8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대한 법률자문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임시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명예퇴직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지? □ 피후견인이 명예퇴직 조건에 부합한다면 명예퇴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 임시후견인이 법원에 상황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사건본인의 명예퇴직 의사에 갈음하는 결정문 등을 추가로 받는다면 명예퇴직 대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적인 형태로 임시후견인의 대리권 범위가 정해졌다면, 명예퇴직 대리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명예퇴직 신청이 본인만 가능하다는 것은 후견인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재산 관리행위로, 임시후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임시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피후견인의 명예퇴직의 신청 및 청구에 관한 대리권'이 포함되었다면 명예퇴직 대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9	채권가압류 발생 시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자문 요청	□ 노무비 지급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 □ 하도급직불액 지급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	□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지급 가능함 □ 채권가압류 이후 기성금을 지급할 경우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어 하도급직불 기성액 포함 공탁
			□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노무비 지급 가능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채권가압류 전 하도급 직불금액 미확정으로 하도급 직불 기성액 포함하여 공탁
			□ 산출내역서에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고 공사계약서 하단에 산출내역서도 계약의 일부로 효력을 갖는다는 기재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무비 부분과 그 밖의 공사 대금 부분이 구분이 있어 지급 가능함. □ 직접지급합의서에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시점에 하도급이 이루어진 부분을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하면서 그 시점에 하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가압류가 직접지급합의에 우선한다고 보여 하도급직불 기성액 포함하여 공탁
			□ 노무비 구분관리 확인서와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및 공사시행 시점에서 제출받아 그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압류금지임금에 해당되므로 노무비 지급 가능함 □ 직접청구권의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 당연 인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혼합공탁 내지 집행공탁 해야함
			□ 계약서 상에 노무비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발주자가 지급해야 할 원도급 노무비 총액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A사 지분 노무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소급 기성금 부분에 관하여 가압류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소급 기성금의 액수를 둘러싸고 다툼발생이 예상되므로 하도급 직불 기성액을 포함하여 공탁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0	지방보조금 환수조치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 마을교육지원단 주관 2021 마을교육학습공동체 지방보조금 환수 조치 관련 법률 자문 - 2021년 공모사업 선정 공동체 <평생공부독서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운영 정산 및 결과 보고 미이행과 연락 두절로 인한 보조금 환수 통보 및 추가 조치 문의 - 자문요청 당시 보조금 환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완료하였으며 내용증명 외의 추가 절차 및 법적 근거 문의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명확한 근거와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취소 결정 자체가 위법성의 여지가 있으며 행정처분의 취소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이 아니라 '취소처분통지서'가 적합 □ 교부 결정 취소가 적법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또는 교육감) 명의의 교부 취소 결정이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는 지정된 기한에 보조금과 이자반환을 명하여야 함. 미이행시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조치 안내
11	교장공모제관련 법령해석	□ 교육감은 공모교장 선발이나 임용요청권이 있는가?	□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및 추천', 그리고 '단수 임용추천'을 할 수 있게끔 하여 위 임용제청권의 행사를 '지원'하게 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교육감은 공모교장 임용 요청권이 없지만, 교육부장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감은 공모교장 임용 요청 절차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모교장 임용요청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같은 취지의 해석상 을설도 가능함.
12	채무자 사망한 경우 채권확보 방법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 확보 방법 및 채권 정리 가능 여부 1.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 되는지? 2. 된다면,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작성 시 승계인 확인 방법 및 기타사항 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2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방법	□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면 됨 □ 신청서 당사자란에 "망 OOO의 상속인들"이라고만 기재하여 제출한 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명령서를 소지하고 관할 구청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발급받아 상속인들을 특정하여 제출 □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채무상속인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책임재산의 유보를 청구할 수 있음.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아니함.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13	인천영어마을 간담회 2명의 참석교사 발언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선행학습 조장 여부	□ A 교사 발언 - 저는 학교현장에서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근무했던 학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습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알파벳, 파닉스도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음 - 영어마을 체험을 하면서 사실 아이들이 영어가 확 늘어서 오지는 않음, 그런데 아이들이 영어 상황에 노출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껴오고, 현장 교실에 들어와서 제 시간에 눈이 조금 초롱초롱 해지는 그런 부분을 봤음 □ B 교사 발언 - 인천영어마을에 간다고 신청한 애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음.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과 어? 쟤가 왜 신청했지? 하는 아이들. 이렇게 두 부류가 갔다 오면 그 두 부류의 아이들은 만족도가 엄청 높았음 -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우는 영어가 조금 시시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를 실컷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 잘 못하는 아이들은 물론 반도 못 알아듣지만 본인 입으로	□ A, B 교사 발언은 인천영어마을 체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 해당 교사들의 발언만으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출제, 평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실상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 선행학습 등에 관한 관련법령의 목적, 입법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학습이란 일정한 학습과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선행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사들의 발언은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얘기를 해보고 영어가 하루 종일 계속 들리는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경험이 너무 신선하고 좋았다고 말을 많이 하였음	것으로 판단됨
14	입찰담합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 입찰담합행위 참여 업체별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적용근거 - 2017년도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 입찰담합 관련 낙찰업체를 담합을 주도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서 해당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낙찰업체가 입찰담합행위를 주도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들러리를 서줄 것을 부탁하였고 또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로 된 것을 볼 때,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서 해당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낙찰업체가 입찰담합행위를 주도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들러리를 서줄 것을 부탁하였고 또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로 된 것을 볼 때,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영업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업체 모두가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히기 위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담합의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담합의 주도자, 단순 참여자 구분이 어려움. 또한 동일한 사안에 '담합 주도자'의 지위가 아닌 '단순 참가자'로 해석한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5	불법수색관련 법률자문	□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8조(음모, 예비),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31조(교사범),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제322조(미수범),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에서 조사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수색 교사'에 대해 **갑설)** 음모, 예비로 보아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을설)** 미수범으로 보아 처벌해야 하는지	□ 실행하지 않아 미수가 아니며, 불법수색죄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모두 해당되지 않음 □ 실행하지 않아 미수가 아니며, 불법수색죄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모두 해당되지 않음 □ 교장, 교사에게 형법적으로 불법수색죄를 묻기 어렵다고 사료됨
16	부평중 내 미등기 사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제기 검토	□ 부평중학교 내 미등기 토지(375-7번지)의 현 토지대장 소유자 및 그 상속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환지 과정이 불분명하여, 토지대장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우리교육청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제가 실익(승소가능성 등) □ 우리교육청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 확인 청구하는 방법 외에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 재산세 부과자료가 있다면 소유자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세무서로 사실조회를 해 볼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상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볼 수 없는바,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일부 누락돼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를 대신해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에 건축법 및 동 시행령상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위 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를 권리관계 이외의 사항은 대장상의 기재를 우선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대장에 소유명의로 등재된 것으로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 등기부가 공신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형식주의 하에서 소유권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되는 것이므로, 법원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인받아 등기하는 방법 이외에 달리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상정하기 쉽지 않음.
			□ 미등기토지라도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상 상에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고 있음. □ 부평동의 토지대장 상 등록명의자 김○○이 누구인지 확인조사 후 그 결과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검토해 보기 바람.
			□ 이 토지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 처분된 토지로, 종전 토지 자체가 미등기 상태라면 환지 역시 미등기이므로 환지의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종전 토지에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종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환지등기를 하여 환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개설되는 것으로 보임. 이 토지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상태는 아니므로,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니라 환지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등기소의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실무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1977년 경부터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점유자로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권을 가졌다고 하여 바로 소유권자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청구를 해야함.
17	학력향상 방과후 강사 선정 관련 법률자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1) 공고상 '지원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일부만 갖추어도 되는지 2) 접수기한 내에 필수 공통서류만 낸 후, 접수기한 종료 후 선택서류(해당자)를 제출했을 경우 인정 가능 여부 3) 당초에 계획이나 공고에 없었던 서류심사 기준을 서류 접수 종료 후 내부적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 공고상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지원자격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고문에 유의사항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기재되어 있어 접수 마감 이후 제출된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인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채용절차법」제8조는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한 만큼 응시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당초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많음.
			□ 지원 자격 중 ①, ②는 충족요건으로 해석되고 , ③은 결격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임 □ 공고문에 응시원서 제출에 마감 기한이 있는 것은 마감 기한 전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마감 기한 후에 제출된 자료로 가점을 주는 것은 법령과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음. □ 내부 협의를 통해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됨.
			□ 공고상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지원자격이 있다고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고문에 서류접수기한 명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기한이 지나서 추가서류 제출은 불가함 □ 행정청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함 서류접수 완료후 내부적으로 경력점수 등 특정자격을 제외하고자 협의한 행위는 신뢰의 원칙 위반 행위임
			□ 공고문에 지원서 접수시 모든 서류를 접수 기한내에 다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어 지원서 등 필수서류를 접수하고 이후 선택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특정자격을 제외할 것이었다면 공고 또는 공고 전의 내부계획에 포함되었어야 하고 공고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
			□ 접수기간이 끝나고 추가로 선택서류 제출은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구직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나 특정인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음 □ 특정자격을 제외할 것에 대한 합의가 자발적이 었다면 법령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내부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의 해석 변경까지 지원자들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공고 내용을 보면 제출서류를 통해서 서면심사 후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른 지원자들은 사실상 기간 이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과의 형평성상 이를 허용하기는 어려움 □ 경력 점수가 점수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경력을 제외하는 결정을 통해서 지원자 결정에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미리 공고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있음.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8	난정평화교육원 개원에 따른 승진가산점 부여 관련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5항 1호에 도시·벽지 경력 가산점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난정평화교육원은 이전 도서·벽지(접적 '나')에 속하는 난정분교가 폐교된 자리에 2022년 6월 개원 예정이며 현재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속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등재를 위해 교육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2023년 상반기에 법령 등재(접적 '나') 예정임. □ 이에 법령 등재 전 근무시점부터 난정평화교육원에 근무 교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등재 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 개원하는 곳인 난정분교가 이전에 접적지역에 속하고 법적 등재 절차만 남았기 가산점 부여 가능 □ 도서벽지 진흥법 등재 예정만으로는 가산점 부여 불가. 법령에 등재 후 소급 적용 가능 □ 도서벽지 진흥법 등재 예정만으로는 가산점 부여 불가. 법령 등재 후 소급적용 가능 □ 법적 등재여부는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난정평화교육원은 도서벽지 요건과 행정교육기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해석됨
19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기한 연기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육지원청과 한전과의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고지에 대한 행정소송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만약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납부기한을 행정청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 다른 행정청(○○교육지원청)과 한전 사이에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고지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단서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답변을 생략함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단서의 의미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국유재산 사용자 또는 사업자의 자금난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납부가 어려워 관련 규정대로만 처리될 경우 공공의 이익과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청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여기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국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행정소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임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답변을 생략함
			□ 한전이 ○○교육지원청과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고지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정은, 위 행정소송의 내용을 볼 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단서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소송 종료 후 60일 이내와 같이 상대방이 이행 가능한 기한을 정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0	부평중학교 복합시설증축을 위한 사유지 처리 관련 법률 자문 요청	□가항: 미등기토지(사유지)에 대해 인천시교육감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가능 여부 □나항: 미등기토지(사유지)의 점유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여부 □다항: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불가능할 경우, 그 외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확보 방법 등	□ 미등기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토지의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특정하는 것으로 보임. 교육청이 김OO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OO의 미등기 토지 소유권자임을 확인 받는 것(대위소송)은 실익이 없고, 교육청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 받아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다는 의견. 다만, 교육청이 미등기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 1972년 환지처분 과정이 불분명하더라도 환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일응 어려워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 □ 환지처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이 토지대장 문서에 확인됨에도 수십년동안 점유한 것을 자주 점유로 평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점유취득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어렵다는 의견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김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김OO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는 의견
			□ 사업시행자 인천시가 환지촉탁등기 방법으로 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소송 미등기 부동산의 순차 매수인이나 시효취득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및 예규상의 보존등기 신청 적격자인 대장상 최초 등록자인 김OO를 대위하여 김OO명의로 보존등기와 매매 또는 시효취득 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등에 기해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 순차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의견 □ 건축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주택법 제22조 방법으로 매도 청구 또는 소유자 불명재산과 같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권원을 100% 확보하지 않고도 부평구청의 협조로 건축허가 받고 착공할 수 있다는 의견
			□ 토지대장에 "김OO"로 등록되어있어 위 토지를 '인천시교육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할 수 없다는 의견 □ 토지대장상 김OO로부터 인천시교육감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인천시교육감은 김OO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 등기 후 '인천시교육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토지대상상 김OO명의로만 등록된 상태이므로 소유권이전 청구도 불가능하다는 의견 □ 무주부동산으로 파악되는 경우 공고절차를 거쳐 토지대상상 소유명의를 '국(기획재정부)'으로 한 다음 김OO를 대위하여 김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국(기획재정부)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인천시교육감'으로 이전받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대장상 명의변경 후 소유권보존등기 방안 검토
21	채권추심관련 처리와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	□ 채권 추심관련하여 채권액 확보없이 대금이 전액 지급된 과실이 있을때, 법적절차와 채무자에 대한 법적대응 방안은?	□ 채권추심에 관하여는 명확히 지급하여야 하는바 추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함
			□ 채권추심에 관하여는 명확히 지급하여야 하는바 추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함
22	직위해제 교사의 보수 소급 지급 등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1항4호에 의해 직위해제 된 교사가 직위해제 복직된 이후 보수 소급과 성과상여금 지급이 가능한지?	□ 직위해제를 하였다가 그 사유가 소멸(사안에서는 혐의없음 불송치결정)되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따로 직위해제처분의 직권취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보수와 수당에 있어서 미지급된 부분(차액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제3항).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따로이 해당 교사가 다투지 않아 소청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직위복귀 및 보수·수당의 소급지급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미지급 보수는 '그 차액'부분을, 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과상여금도 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제외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23	학교야구부 지도자 재채용 관련 법률자문	□ 매년 재계약을 해왔던 코치 OOO와의 2022년도 재계약에 있어 2017년에 있었던 코치 OOO의 선수 체벌관련 본교 징계와 관련하여 재채용(계약)이 적합한지 □ ○○○고등학교 2017년도 코치 OOO의 징계가 징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한 행정적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코치가 2017년 징계 이후 약 5년간 문제없이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 징계 사실만으로 취업규칙 제5호 제10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17년 징계의 경우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징계 이후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 하자를 문제 삼아 재징계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단지 과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임)를 받았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당시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2018년 재계약을 진행하였던 상황 등 학교에서 판단하여 재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17년 징계는 절차위반 소지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재채용 된 상태로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아 2022년도에 재채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코치에 대한 2017년도 징계는 관련 법령의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만약 코치가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7년도 징계처분 취소판결을 받는다면, 귀교는 코치에게 3개월 감봉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임. 그러나 코치에 대한 2017년도 징계처분의 취소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코치에게 감봉했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학교회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귀교에서 직권으로 2017년도 징계를 취소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코치의 이의제기나 소 제기가 없는 이상, 특별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사료됨
24	계약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자문회신	□ 업무 경과 내용 -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전문상담사 TO를 받았으나 미배치로 기간제를 채용해야 하는데 행정착오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기간제 전문상담사 대신 전문상담 기간제교사로 잘못 채용함 □ 자문요지	□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계약은 (유동적)무효로 볼 것이어서 애초부터 해지의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 가사 유효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계약서 제18조에 따라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더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 행정착오로 인한 사유로 잘못 계약한 것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2) 기간제 계약서 제18조 계약의 해지 사유 중 ①호"8.기타 특별히 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근거로 계약자에게 해지를 요구 시 법적 문제 3) 계약자가 계약해지에 요구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방안	라도, 계약의 해지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무효이든 계약 파기이든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장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무효화 내지 계약 파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해결방안 등 가. 내용증명 등을 근로자에게 발송하여 계약의 무효 내지 계약 해지의 통보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결국 금전 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의 소제기 내지 이의제기 등 이전에 손해배상 상당액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당해 채용을 추인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25	위생용품 자판기 미수거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 본교에 보관중인 위생용품 자판기(2대) 미수거건과 관련하여 수거기한내에 미처리시 수거의사없음으로 학교에서 폐기처리할수 있는지 여부와 우편법 제46조(내용증명 2회)으로 수거 재요청했을 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자판기 설치업체가 수거기한내에 수거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당해 자판기는 여전히 설치업체의 소유이므로, 학교에서 임의로 폐기처리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하여 수거해 갈 것을 청구하여야 함. □ 내용 증명 우편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낸 우편의 내용을 사후에 우편관서에서 확인해 주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발신자가 당해 자판기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는 것은 아님.
			□ 상대방 동의없이 폐기하면 재물손괴로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학교에서 비용을 주고 물품 보관장소에 보관시키고 이후 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내용증명으로 처리시한을 정해 통보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음.
26	과다지급 급여 반환	□ 질의배경: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본교 감사 수감 결과, 2019학년도 본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원(A)에게 근무연수 입력 및 호봉 재획정 착오로 과다 지급된 급여(566,420원)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대하여 A에게 반환 요청하였으나, A는 반환 거부 의사 밝힘. □ 질의내용 1. 과다 지급된 급여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관련 법령) 3.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관련 법령) 4. 본교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	□ 기간제 교원(A)과 학교장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서, A와 학교장 사이의 법률관계는 전적으로 위 근로계약내용에 의하여 규율되고, 기간제 교원 채용 시 학교장이 준수해야 할「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A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설령 학교장이 A를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켜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과 다르게 근무연수를 산정하고 호봉재획정을 한 나머지,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근로계약조건을 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학교 측의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에 관련된 사정으로서, 타방 당사자인 A가 학교 측의 그와 같은 착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착오 발생에 A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수령한 급여는 적법하게 체결된 근로계약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 달리 위 과다지급금을 반환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수단도 없다고 보임.
27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회수 관련 자문	□ 연간 유지보수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학교가 계약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일부 용역 완수 후, 미청구한 금액을 학교가 학교회계로 세입조치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용역 완수 후 미청구한 금액을 학교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음. - 학교는 계약상 해당 월의 용역을 완수하였다면,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채무가 발생한 것임. - 또한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아니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이익을 포기하였다면 계약보증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음.
28	사용허가 만료 자판기 철거 사무처리 관련	□ 자판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후 계약상대자가 자판기를 철수하지 않아 수차례 자판기 철거를 종용하였으나 하지 않고 연락 두절된 경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자체 철거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함	□ 자판기는 계약상대자 소유이므로 학교장이 임의로 폐기처리 할 수 없으며, 학교장 직권 철거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하므로 변상금 등 부과 가능함
			□ 공유재산법에는 행정상 직접강제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없으며 변상금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강제 철거는 불가능하며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를 제기할 수 있음
			□ 학교장이 철거해도 무방함